

의안번호	2207779
의 퇴 인	박수영 의원
회 답 일	2025. 2. 6.
추 계 번호	25F0500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및 창업한 기업에 대한
가업상속공제 확대－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
1	안 제18조의2 (가업상속공제)	○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		
		구분	현행	개정안(기회발전특구 지역)
		공제 대상	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	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(매출액 제한 규정 폐지)
		공제 한도	가업기간 10년 이상 ~ 20년 미만	공제한도 폐지 (공제액: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)
			가업기간 20년 이상 ~ 30년 미만	
			가업기간 30년 이상	
			300억원	
			400억원	
			600억원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8조의2 (가업상속공제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을 폐지하게 되면 상속세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 - 기회발전특구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지

정·고시되는 지역

- 지방정부(시·도지사)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 후 산업부장관이 지정

□ 그러나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및 창업한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‘기회발전특구’지역 입주기업들 가운데 가업상속 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시점과 가업용 자산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○ 참고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14개 시·도에 47개 지역이 지정되었음

- 1차 지정(2024년 6월 20일): 대전광역시(2개 지역), 전라북도(3개 지역), 전라남도(5개 지역), 제주특별자치도(1개 지역), 경상북도(4개 지역), 대구광역시(3개 지역), 부산광역시(1개 지역), 경상남도(1개 지역) 등 8개 시·도에 20개 지역 지정
- 2차 지정(2024년 11월 6일): 세종특별자치시(3개 지역), 충청남도(5개 지역), 광주광역시(2개 지역), 강원특별자치도(6개 지역), 충청북도(4개 지역), 울산광역시(3개 지역) 등 6개 시·도에 23개 지역 지정
- 3차 지정(2024년 12월 26일): 경상남도(2개 지역), 부산광역시(2개 지역) 등 2개 시·도에 4개 지역 지정

[표 1]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: 2025. 2. 5. 현재



1·2차 대전, 전북, 전남, 제주, 경북, 대구, 세종, 충남, 광주, 강원, 충북, 울산

3차 부산, 경남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 답변자료

- 그리고 최근 3년간 가업상속공제의 결정현황을 살펴보면, 2021년 110건(3,475억원), 2023년 188건(8,378억원)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45건(1조 5,282억원)의 가업상속공제 발생

[표 2] 최근 3년간 가업상속공제 결정현황

(단위: 건, 억원)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	합계
건수	110	147	188	445
공제금액	3,475	3,430	8,378	15,282

자료 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, 각 연도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